

電子工業登録案内

本会는 商工部令 제659호(82. 3. 11.)
에 의거하여 電子工業登録을 받고 있다.
業体의 業務에 署오가 없도록 해당되는
전자공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전자공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제정상공부령	제245호(69. 4. 28)
개정	제441호(75. 6. 25)
개정	제496호(76. 11. 6)
개정	제604호(80. 7. 26)
개정	제659호(82. 3. 1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공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전자공업의 등록) ①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회사의 연혁서(별지 제 2호서식)
3. 생산시설 현황(별지 제 3호서식)
4. 생산 및 판매현황(별지 제 4호서식)
5. 투자 및 자금조달현황(별지 제 5호서식)
6. 외자도입 현황(별지 제 6호서식)
7. 기술도입현황(별지 제 7호서식)
8. 연구개발현황(별지 제 8호서식)

②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자공업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장은 사업자별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흥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조(등록증의 갱신) 사업자는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 5 조(등록의 취소요청등) ① 진흥회장은 사업자가 법 제 5 조제 1 항제 1호 및 제 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상공부 장관에게 전자공업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진흥회장 및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전자공업진흥기금의 운용관리상황 보고등) ① 영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원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전자공업진흥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매 4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한

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진
홍기금사업진도 보고서를 매 4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진홍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 ① 기금의 운용으로 생
긴 수익금을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 제6조제4항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영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액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자금의 50퍼
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사용한 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신
청할 수 없다.

제8조(국산화촉진전자기기의 세부품목) 영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촉진전자기기등의

세부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전자공업통계조사표 제출) ① 사업자는
매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업통계조
사표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홍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진홍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
업통계조사표를 매 4 분기별로 총괄하여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이미 전자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전자공업등록증의 갱신을 하여야 한
다.

대상 및 범위	세 부 품 목
영상기기 및 장치	① 녹화 및 재생장치 ② TV모니터 ③ 비데오 카메라
음성기기 및 장치	① 음향기록 및 재생장치 ② 음향전자기기
통신기계, 기구 및 장치	① 전화교환기 ② 반송장치 ③ 광통신장치 ④ 데이타통신장치 ⑤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⑥ 인쇄통신장치 ⑦ 사령전화장치 ⑧ 선로유도자동저감장치 ⑨ 선로집선장치 ⑩ 무선송수신기 ⑪ 무선송수신기 ⑫ 마이크로웨이버통신장치 ⑬ Paging통신장치 ⑭ 방송 및 방송중계장치 ⑮ 콘버터 ⑯ 인버터 ⑰ 태양광발전장치
무선응용기기 및 장치	① 방향탐지장치 ② 레이다 및 항행전자보조장치 ③ 원격조정장치
전자응용기기 및 장치	① 전자계산조직(단말, 주변 및 관련기기와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② 전자복사기 ③ 금전등록기 ④ 회계기 ⑤ 신호 및 신호제어장치 ⑥ 경보장치 ⑦ 의료용 전자장치 ⑧ 초음파응용기기 ⑨ 금속탐지기 ⑩ 고주파 응용기기
전자계측기기 및 장치	① 전자계측기기

[별지 제2호 서식]

회사의 연혁서

① 연 월 일	② 주 요 연 혁 내 용	③ 비 고

2710-15A
1982. 2. 8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 / m²)

[별지 제 1호 서식]

〈앞면〉

전자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체명						
	④ 주소	주사무소	(전화)				
		분사무소	(전화)				
⑤ 자본금계 :	백만원	내자 :	백만원	외자 :	천불		
⑥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명회사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내국인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작회사(내국인 %, 외국인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회사			
⑦ 업종	<input type="checkbox"/> 산업용전자기기		<input type="checkbox"/> 가정용전자기기	<input type="checkbox"/> 전자부품	<input type="checkbox"/> 전자재료		
⑧ 공장	공장명	소재지	대지	건평			
			천평	천평			
⑨ 종사원	계	임원	사무직	전문기술직	기능직	잡금직	기타

전자공업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의 등록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귀하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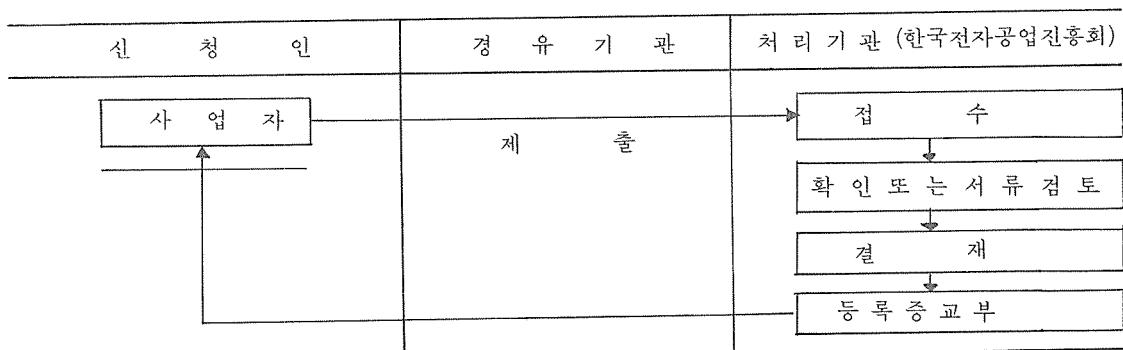
- | | | |
|-------------------------|---------------|-----|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6. 외자도입현황 1부. | 수수료 |
| 2. 회사의 연혁서 1부. | 7. 기술도입현황 1부. | 없음 |
| 3. 생산시설현황 1부. | 8. 연구개발현황 1부. | |
| 4. 생산 및 판매현황 1부. | | |
| 5. 투자 및 자금조달현황 1부. | | |

2710-1B(1)
1982. 2. 8.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 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 3 호 서식]

생 산 시 설 현 황

① 생 산 시 설 명	② 단 위	③ 수 량	④ 단 가 (천 불)	⑤ 구 입 국	⑥ 구 입 년도	⑦ 내 용 년 수

2710-5 A(1)
1982. 2. 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 / m²)

[별지 제 4 호 서식]

생 산 및 판 매 현 황

① 품 목	② 규 격	연 간 생 산 능 力			판매현황(실적 또는 계획)			
		③ 단 위	④ 수 량	⑤ 금액 (천불)	⑥ 수 출 (%)	⑦ 로 칼 (%)	⑧ 내 수 (%)	⑨ 기 타 (%)
합 계								

2710-4 A(1)
1982. 2. 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 / m²)

[별지 제 6 호 서식]

외 자 도 입 현 황

(단위 : 천불)

① 도 입 년 월 일 (향후 3년간 예정포함)	② 도입 내용	③ 금 액	④ 도 입 선	⑤ 도 입 조 건

2710-17A
1982. 2. 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 / m²)

[별지 제 5호 서식]

투자 및 자금 조달 현황

단위 : (내자 : 백만원)
(외자 : 천불)

구 分		① 실 적	② 향후 3년간 계획
투 자	③ 시 설		
	④ (건 물) (기 계) (기 타)		
	⑤ 연 구 개 발		
	⑥ 운 전		
	⑦ 기 타		
	⑧ 합 계		
	⑨ 내 자		
조 달	⑩ (자 기 자 금) (국 민 투 자 기 금) (전자공업진흥기금) (일 반 금 용) (사 채) (기 타)		
	⑪ 외 자		
	⑫ (외 국 인 투 자) (차 판) (외 화 대 부) (기 타)		

2710-16A

1982. 2. 8.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 m²)

[별지 제 7호 서식]

기술 도입 현황

① 도 입 년 월 일 (향후 3년간 예정포함)	② 도 입 분야 (품목)	③ 도 입 내 용	④ 도 입 국 및 회사	⑤ 도 입 조건	⑥ 비 고

2710-18A

1982. 2. 8.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 m²)

[별지 제 8호 서식]

연 구 개 발 현 황

(단위 : 백만원)

① 착 수 년 월 일 (향후 3년간에 정포함)	② 연구개발 분 야	③ 연구개발 내 용	④ 소 금 요 액	⑤ 종 료 년 월 일	⑥ 비 고

2710-19A
1982. 2. 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 / m²)

[별지 제 10호 서식]

〈앞면〉

전자공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업체명		
④ 변경 사항			

전자공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전자공업등록증
3.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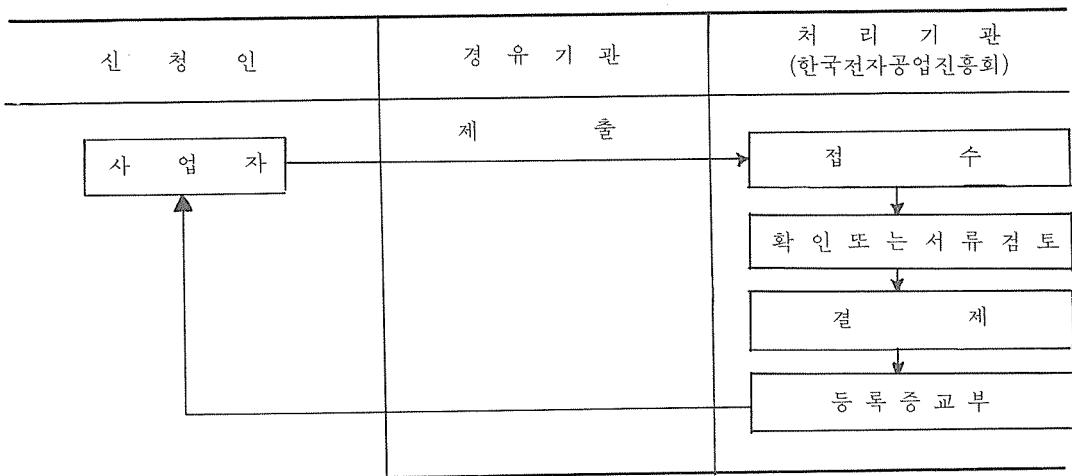
수 수료
없 음

2710-11B(1)
1982. 2. 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 / 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11호 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신

년 월 일
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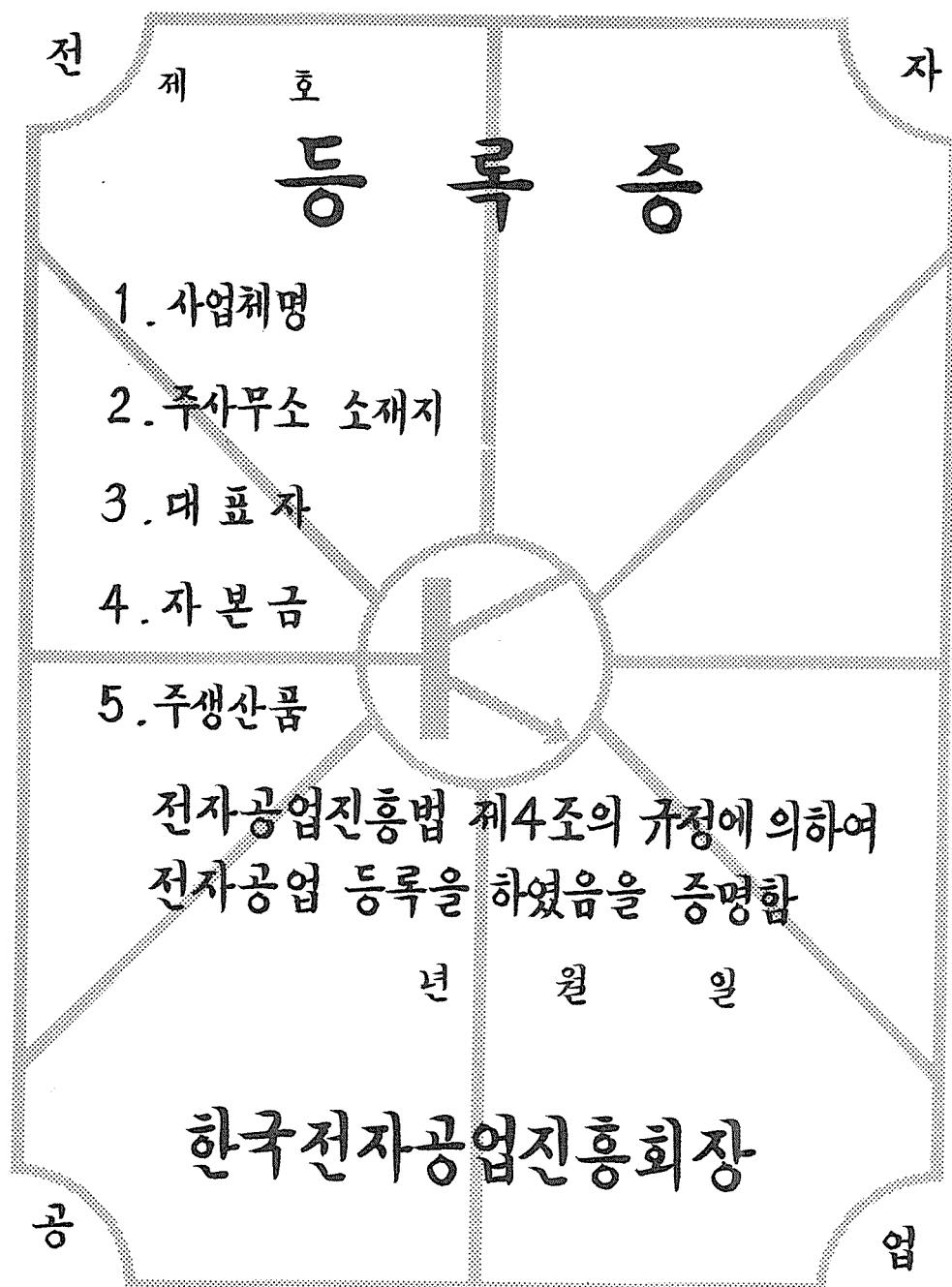
전자공업진흥기금운용상황보고서 (/ 4분기)

① 기금총액	구분	② 대출	③ 상환		④ 미대출잔액		
	분기		원금	이자			
	⑤ 전분기말누계						
	⑥ 금분기						
	⑦ 계						
금분기대출			금분기상환				
⑧ 일자	⑨ 사업체명	⑩ 금액	⑪ 비고	⑫ 일자	⑬ 사업체명	⑭ 금액	⑮ 비고
계							
⑯ 의견				⑰ 의견			

2710-20D
1982. 2. 8.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 m²)

[별지 제 9 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신

년 월 일
발신

전자공업진흥기금사업진도보고서 (/ 4 분기)

① 기금총액	구분 분기	② 대출	③ 상환		④ 미대출잔액
			원금	이자	
⑤ 전분기말누계	⑥ 금분기				
	⑦ 계				
			사업	진도	
⑧ 사업계획					
⑨ 전분기말진도					
⑩ 금분기진도					

2710-210D
1982. 2. 2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 / m²)

제 품 별 국 별 수 출 현 황

구	부	업체	CODE
Column	①	④	
구	부	카드 No.	제

正

본 통계는 경제기획원고시 제19호에 의한 자정통계로서 본 통계의 작성에 있던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통계무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며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18조 규정을 바립니다.

※ 가 군에 라우 밴드 \$ 11S\$로 화사(마을) 15일 향유(설용) 기업(한국)이 함께 위

*※ 본 조 사표는 천 삼 치리 이스토리 / 1, 2, 3 토드)으로 기이-제작부 허
화로 기입하면 정정이 불가함.

조사표

※ 금·월·말 고의 수령과 급액은 일월 전월말 재고의 수량과 급액을 동일하게 기록하여 고하.

※ 전면의 금일수출란의 수량과 금액은 토지의 제품별 수출현황의 수량과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본 조사표 작성시 문의사항은 전화 778-7692~4, 778-0911 통제파로연락 바람.

* 소사료 제출자 : 구별번호 100 세 풀무원 시장 | 통계과 1001호 마한전자공업 진흥회